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3. 1.

(주)위버스컴퍼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위버스 컴퍼니
대표자	최준원 대표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위버스 (앱/웹) www.weverse.io / 약 260만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3천억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플랫폼운영팀 양유나 팀장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위버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22년 6월

- (1)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스템 기술 검토 및 이미지에 대한 게재 제한 적용

- 2022년 9월

- (1) 불법촬영물등 식별/게재제한 기능 시스템 적용 및 로그 기록 보관되도록 반영
- (2)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어 대상 검색 결과 송출 제한
- (3)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공지

- 2022년 10월

- (1)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항목 추가 적용
- (2)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되도록 반영

- 2023년 1월

- (1) 네이버의 클린봇 적용하여 콘텐츠 사후/사전 자동 필터링 처리 적용
- (2) 불법 촬영물 전용 신고 페이지 고도화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위버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100% 복사

도움말

결재이전 1
결재이전 요청
문서 변경내역
결재선 변경내역 1

전체 의견 ▾
결재이전 작성

이름: [이름] | 직책: [직책] | 부서: [부서]

이메일: [이메일] | 연락처: [연락처]

귀속처

[과]카버스팀장서

내빈

이리과 같이 불법 촬영물등 유통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승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람 -

2022년 6월

(1)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스템 기술 검토 및 이이지에 대한 자체 점검 수행

2022년 9월

(1) 불법촬영물등 식별/거제된 기능 시스템 적용 및 로그 기록 보관요율 반영
 (2) 불법촬영물등 안전 검색에 대상 검색 결과 유통 차단
 (3) 불법 촬영물등 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적용 안내 실시

2022년 10월

(1)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항목 추가 적용
 (2)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요율 반영

2023년 1월

(1) 내이버의 클린봇 적용하여 콘텐츠 사후/사전 자동 필터링 처리 적용
 (2) 불법 촬영물등 신고 페이지 구조화

이상입니다.

TOP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신고 사유에 불법 촬영물 관련 항목 추가
 - (1) 성적인 불법 촬영물
 - (2)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3) 허위 영상물
- 고객센터 문의 항목에 [불법촬영물] 전용 신고 접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는 전담 신고처리 운영 부서의 담당자 메일로 바로 연결 및 확인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https://weverse.io/xMediaReport>
 - PC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with the URL weverse.io/xMediaReport. The page title is "불법촬영물 신고 · 삭제 요청서" (Report and Deletion Request for Illegal Filming). Below the title, there is a notice: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If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falls under illegal filming, etc., operators can request a review fro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n such cases, the information in the report and deletion request may be transmitted and provided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note below states: "*표시 항목은 필수 작성사항입니다. 그 외 항목도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Items with an asterisk are mandatory. Please provide information for other items as much as possible to ensure prompt action.)

The main section is titled "신고 · 삭제 대상" (Report and Deletion Target). It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 URL: <https://weverse.io/bts/fanpost/0-116684314>
- 신고 · 요청 구분 (중복선택가능) * (Report and Request Category, Multiple Selection Possible):
 - 불법 촬영물 등 유통신고 (Report on illegal filming, etc.)
 -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요청 (Request for deletion of illegal filming, etc.)
- 신고 · 요청 사용 (중복선택가능) * (Report and Request Use, Multiple Selection Possible):
 - 불법 촬영물 (Illegal filming)
 - 허위영상물 (False video)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Child/teen sexual exploitation)

Below these fields is a section titled "신고 요청 사유 상세" (Detailed Reason for Report Request). It lists the following categories and their descriptions:

- 불법 촬영물 (Illegal filming)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Filming of a person's body against their consent, likely to cause sexual desire or embarrassment)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Cases where filming was done without the subject's consent at the time, but later distributed against their consent, including cases where the subject filmed themselves)
- 허위 영상물 (False video)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 표시 항목은 필수 작성사항**입니다. 그 외 항목도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삭제 대상

URL

<https://weverse.io/bts/fanpost/0-116684231>

신고 · 요청 구분 (중복선택가능) *

- 불법 촬영물 등 유통신고
-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신고 · 요청 사용 (중복선택가능) *

- 불법 촬영물
- 허위영상물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요청 사유 상세

- 불법 촬영물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플랫폼 운영팀

· support@weverse.io

불법촬영물등 신고-요청건 관리												
- 관리 담당자: 영유나 (플랫폼 운영팀) 2022년 10월 - - 불법촬영물 신고 페이지로 접수된 항목 관리 (CS차남에서 담당자 이메일로 즉시 접수되며, 신고-삭제 요청 - 처리까지 관리 내역 정리) -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최신 및 처리 필수* - 관련하여 URL, 첨부파일, 영상물등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1~2주일 사이 삭제												
No	접수일	처리일	이름(기관/단체명)	생년월일(기관/가입번호)	이메일	연락처	신고-요청 구분	신고-요청 사유	신고-요청대상	URL	첨부파일	처리상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검색 제한 단어 검색 시 송출 제한

- (1) 위버스 PC는 아티스트 검색만 있고 콘텐츠 관련 검색 기능 없음
- (2) 위버스 APP에서는 검색 제한 단어 검색 시 송출 제한 조치 완료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연관검색어 제공 항목 없음

- 위버스 서비스(PC/APP)는 연관검색어를 제공하지 않음

- 검색어 노출 제한

- MOBILE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위버스	유	XCAM	
2	위버스	유	클린봇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서비스 공지

-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https://weverse.io/notice/3658>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2022.09.14

안녕하세요, 위버스입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위버스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 불법 촬영물 등 검색 결과 송출 제한
- 불법 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 제한
-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처벌 가능성 사전 경고
- 로그기록의 보관

▶ 위버스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버스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을 운영,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운영 등 법에서 정한 의무 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란,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위버스)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 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 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합니다.

위버스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 정보 추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 정보 DB에 따라 위버스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 제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로그기록 보관

- 법령에 따라서 기술적 조치에 관한 로그 기록 3년간 보관
 - (1) 로그 기록과 별도로 신고 접수 기록은 분리하여 3년간 보관
 - (2) 신고 접수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위해 1~2주 정도 보관 후 처리 후 즉시 파기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자동 시스템 고도화 및 빠르고 정확한 신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 제공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도입한 자동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
 - 이미지/영상/단어(글귀)를 자동으로 필터링 후 블라인드 처리하는 시스템 고도화 및 점진적 적용 범위 확대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접수를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페이지 고도화
 - (1) CS 채널을 통한 신고 뿐만 아니라 전용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 제공
 - (2) 불법촬영물 신고 전용 작성 항목을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삭제 요청 건수 없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2.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등	-	-	-	-	-	-	-	-	-	-	-	-	-	
		기관·단체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	-	-	-	-	-	-	-	-	-	-	-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 단	-	-	-	-	-	-	-	-	-	-	-	-	-	
		각하·해당없 음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공지를 통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 안내

- (1) 서비스 공지를 통한 안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 (2)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접수 전용 페이지에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안내 예정

▶ 불법 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란,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위버스)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 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 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합니다.

위버스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 정보 추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 정보 DB에 따라 위버스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 제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불법 촬영물 등으로 게재 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원본 삭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앞서 안내드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과정 및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되어 게재 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경우 위버스의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 조치됩니다. 이러한 삭제 조치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 처벌법과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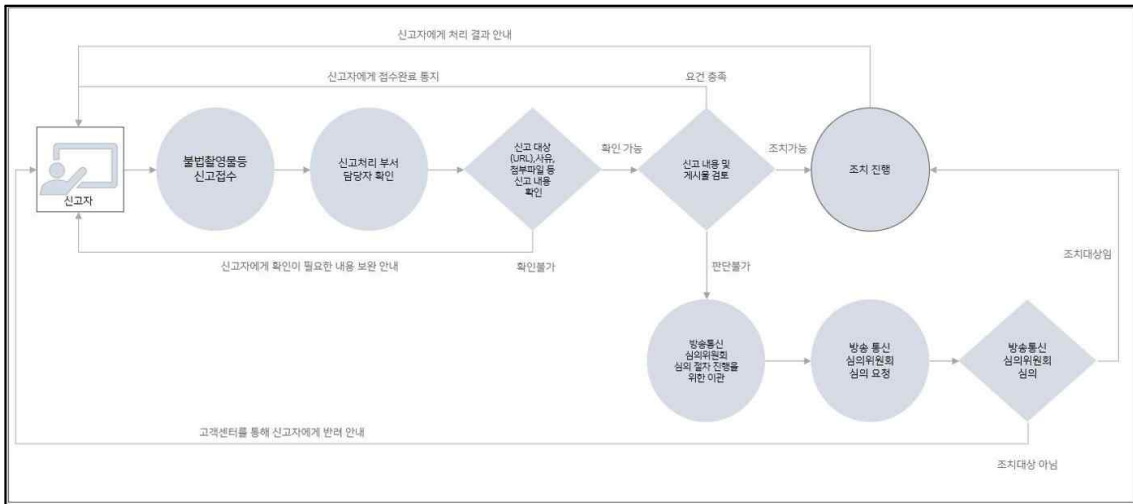
서버 내 콘텐츠 원본에 대한 삭제 조치로 인해 한 번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복구 등은 법령에 따라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 불법 촬영물 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에 앞서, 다시 한번 불법 촬영물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불법 촬영물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게시물의 게재 제한 조치와 함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버스 서비스의 제한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내부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처리 운영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관련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전담 신고 처리 담당자 직접 확인 및 처리

- (1) 신고인에 대한 14일 이내 회신 및 처리
- (2) 불법촬영물 유통한 이용자에게는 엄격한 서비스 이용 제한 처리 (영구 블랙리스트 등)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양유나	플랫폼운영팀	팀장	2022-10-13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2-11-3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양유나	2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2-11-3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김민정	2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2-11-3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김달림	2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2-11-3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이우주	2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2-11-3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권수지	2	방송통신위원회

< 교육 증빙 >

